

발의안 16 공개 채용, 교육 및 계약 결정 시 다양성을 고려 요소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함. 입법부 헌법 개정안.

공식 제목 및 요약

법무장관 작성

이 법안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 사이트 voterguide.sos.ca.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

-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96년 발의안 209에 따라 추가되었던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I조 제 31절을 철폐함으로써 정부 의사 결정 정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발의안 209는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 정부에서 공공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 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근거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기타 주법과 연방법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주요 평가 내용:

- 본 법안은 현재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미칠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 가능한 재정적 영향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공교육, 공개 채용 및 공공 계약 결정 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향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ACA 5(발의안 16)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2020년 법령, 결의안 챕터 23)

상원:	찬성 30	반대 10
하원:	찬성 60	반대 14

입법 분석가의 분석

배경

주 및 연방 헌법은 동등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주 및 연방 헌법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호하며,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유사하게 대우받는다를 것을 의미합니다.

1996년에 California 유권자는 공공 프로그램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96년 California 유권자가 발의안 209에 찬성하면서 주 헌법에 새로운 조항인 제 I조 제 31절을 추가했습니다. 그 새로운 조항은 일반적으로 California의 공개 채용,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발의안 209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일반 업무의 일환으로 필요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 수감자가 동성이어서 하는 주 교도소에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직원 성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및 지방 기관은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구될 경우 특정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젝트에 있어 특정 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시 그 그룹 중 일부에는 여성 및 유색인종이 소유한 사업체를 목표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발의안 209는 특정한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의안 209에 앞서 주 및 지방 기관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종종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내 몇몇 공립 대학은 입학 허가 결정을 내릴 때 인종과 민족을 고려했고, 해당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유색 인종과 여성의 채용을 늘리기 위한 고용 정책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여성 및 소수 인종이 소유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체와의 계약을 일정 부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유권자가 발의안 209에 찬성한 후,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중단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연방법은 특정한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발의안 209 전에도,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주 지역 정책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연방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연방법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확립하고 그 결과 이러한 특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에 따르면 대학은 캠퍼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 허가 결정 시 이러한 특성을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법에도 연방법과 유사한 차별 금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발의안 209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정책 및 프로그램. 유권자가 발의안 209를 승인한 후, California 일부 공공단체는 발의안 209에서 금지하지 않는 특성을 대신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립 대학은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봉사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많은 대학 캠퍼스 또한 입학 허가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와 거주지를 고려합니다. 대학은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의안 209를 위반하지 않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봅니다.

제안

공교육, 공개 채용 및 공공 계약에서 특정 특성에 대한 고려에 대한 금지를 없앱니다. 승인되는 경우, 이 법안은 California 헌법 제 I 조 제 31절에 따른 발의안 209를 철폐합니다. 이는 공교육, 공개 채용, 공공 계약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주 및 지방 기관은 평등한 보호와 관련된 연방법 및 주법과 일치하는 한 더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공공단체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가능한 재정적 영향은 공교육, 공개 채용, 및 공공 계약 결정 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주 및 지방 기관의 향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의 잠재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주 및 지방 기관의 구체적인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재정적 영향은 매우 불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cal-access.sos.ca.gov/campaign/measures/>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원하시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무료로
사본을 보내드립니다.**